◉ 국가교육위원회공고 제2023-4호

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

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(교육연구센터의 지정)에 따라, 「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」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17일
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

1 목적

○ **국가교육위원회**의 **국가교육과정** 관련 소관 **업무**를 전문성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**지원**하기 위해 **교육연구센터 지정·운영**

< 근거 법령 >
-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**제21조**(교육연구센터의 지정)
-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**시행령**」 **제22조**(교육연구센터의 지정)

2 공모 개요

□ 공모 대상 기관

○ 「**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**」 **제22조제1항**에 따른 **기관**

제22조(교육연구센터의 지정)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(이하 "교육연구센터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1. 국공립 연구기관
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4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
5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(영리법인은 제외한다)인 연구기관

□ 지정 기준

○ 「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

> **제22조(교육연구센터의 지정)**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> 1.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
> 2.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
> 3.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

□ 센터 운영

○ **(지정 규모)** 1개소

○ **(지정 유효기간)** 2년

※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사유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**(지원 예산)** 2023년, 600백만원(부가세 포함)

○ **(주요 업무)** 국가교육과정 조사·분석·점검 지원,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,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

< 센터 업무(안) >

- **국가교육과정 조사.분석.점검 지원** : 국가교육과정 조사·분석·점검 업무 지원, 기초·상시 연구 수행, 기초자료 축적·관리 등
- **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** :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활동 지원, 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, 모니터링단 연수·협의회 실시 등
- **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** : 교육부, 시도교육청 등 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 지원, 국내외 교육과정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

※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

3 신청서 제출

○ **(제출 기한)** 2023.3.3.(금)까지

○ **(제출 방법)** 전자메일로 제출 / hoon415@korea.kr

○ **(제출 서류)** 지정 신청서(붙임1 양식), 운영계획서(붙임2 참조), 법인 등기부 등본(법인에 한함)

○ **(문의 사항)**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(☎02-2100-3347)

4 지정 절차

신청 공고 및 접수 (2.17.~3.3.)	→	서류심사 (3월 초)	→	위원회 의결 (3월 중)	→	지정 결과 게시 (의결 즉시)

① **(신청 공고)** 국가교육위원회 **홈페이지**에 공고 **게시**(2.17.~3.3. 예정)

② **(심사) 평가위원회**를 구성하여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(3월 초)

※ 신청 기관(법인)이 하나인 경우에도, 적격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 진행

< 주요 평가 요소 > ☞ **[붙임3] 참조**

- **교육연구관련 전문성(30점)**: 국가교육과정 분야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, 지원기관의 관련분야 전문성,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능력 등을 평가
- **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(40점)**: 사업 방향 및 사업 범위의 적절성, 사업추진 일정 및 방법의 타당성, 센터 운영규정 등을 평가
- **조직 및 인력 보유의 적정성(15점)**: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, 전담 연구진 구성 및 투입인력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
- **사후관리 및 개선방안의 실효성(10점)**: 연구 결과물의 관리·축적 및 활용가능성, 연구 과정·방법의 개선방안, 후속 및 관련 연구 수립방안 등을 평가
- **기타제안사항(5점)**: 상기 내용 외 성공적으로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제언과 아이디어 등 기타 제안사항의 특수성을 평가

③ **(지정) 국가교육위원회**의 **의결**로 지정(3월 중)

※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추진

④ **(지정 결과 게시)**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(의결 즉시)

5 유의 사항

○ 신청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서류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할 수 있음

※ 상기 이외의 예산 관련 사항은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, 기재부 세출예산집행지침,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

붙임 1. 지정 신청서 1부.
2. 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1부.
3.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평가표 1부. 끝.

붙임1 **지정 신청서**

(앞 면)

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서

신청인	대 표 자		고 유 번 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명 칭			
	전 화		FAX	
	주 소 (인터넷 주소 포함)	(우편번호: -) (인터넷 주소:)		
지정 분야	국가교육과정			
사업 개요	사업추진계획	1. 2. 3.		
	담 당 자	직위: 성명:	전 화 (휴 대 폰)	
			E-mail	

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연구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

수수료
없 음

< 구비서류 >

1. 운영계획서
2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에 한함)
3. 기타 증빙 자료(선택 사항)

붙임2 **운영계획서 작성 요령**

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계획서

Ⅰ. 신청기관 개요

○

Ⅱ. 사업수행계획

○

※ 센터의 주요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규정을 포함

Ⅲ. 조직 및 인력 현황

○

Ⅳ.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

○

< 작성 유의 사항 >

- **(본문)** 제목(HY헤드라인M, 15포인트), 내용(휴먼명조체, 15포인트)
  ※ 본문 내 참고사항은 맑은고딕 12포인트
- **(용지 여백)** 위쪽 15, 오른·왼쪽 20, 아래쪽 10, 머리·꼬리말 10
- **(분량)** 가급적 15쪽 이내 작성(증빙자료 제외)
- **(기타 사항)** [붙임3]을 참고하여 개조식으로 작성
  - 제시된 대목차를 바탕으로 하되, 세부 목차는 자유롭게 작성 가능
  - 목차 및 쪽 번호(페이지 하단 중앙) 기재
  - 인용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서는 출처 명시
  -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(둘째 자리에서 반올림)
  -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
  - 기타 증빙을 위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가능

붙임3 **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평가표**

평가 요소		배점	소계
Ⅰ. 교육연구관련 전문성	■ 국가교육과정 분야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	10	30
	■ 지원기관의 관련분야 전문성	10	
	■ 교육부,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능력	10	
Ⅱ.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	■ 사업 방향 및 사업 범위의 적절성 (센터 운영규정 내용 포함)	20	40
	■ 사업추진 일정 및 방법의 타당성	20	
Ⅲ. 조직 및 인력 보유의 적정성	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유 여부 및 확보 계획	7	15
	■ 전담 연구진 구성 및 투입인력 활용계획의 적정성	8	
Ⅳ.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의 실효성	■ 연구 결과물의 관리·축적 및 활용가능성	5	10
	■ 연구과정·방법의 개선사항, 후속 및 관련 연구 수립방안 등	5	
Ⅴ. 기타제안사항	■ 상기 내용 외 성공적으로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제언 및 아이디어	5	5
합계		100	